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 승인 공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및 제42조의4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시허가증

임시허가번호	2020-13호	임시허가 연월일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주)국민은행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01-81-68693(110111-2365321)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대표자 허인		
	명칭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주요내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신청 시 국민은행이 본인확인 과정에서 기존 인증 수단 외 민간인증서(KB모바일 인증서)를 활용하여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		
유효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임시허가조건	○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시행 즉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을 받을 때까지 조건부 임시허가 부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시허가증

임시허가번호	2020-14호	임시허가 연월일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주)미디어로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4-81-96221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16, 10,13층		
	대표자 임장혁		
임시허가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명칭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주요내용 알뜰폰(미디어로그/엘지헬로비전), 이동통신(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알뜰폰 및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임시허가조건	○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시행 즉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을 받을 때까지 조건부 임시허가 부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시허가증

임시허가번호	2020-14호	임시허가 연월일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7-81-13423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6층		
	대표자 송구영		
임시허가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명칭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주요내용 알뜰폰(미디어로그/엘지헬로비전), 이동통신(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알뜰폰 및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임시허가조건	○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시행 즉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을 받을 때까지 조건부 임시허가 부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시허가증

임시허가번호	2020-14호	임시허가 연월일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주)엘지유플러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20-81-39938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대표자 하현희		
임시허가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명칭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주요내용 알뜰폰(미디어로그/엘지헬로비전), 이동통신(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알뜰폰 및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임시허가조건	○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시행 즉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을 받을 때까지 조건부 임시허가 부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시허가증

임시허가번호	2020-14호	임시허가 연월일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네이버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20-81-62517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1층		
	대표자 한성숙		
임시허가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명칭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주요내용 알뜰폰(미디어로그/엘지헬로비전), 이동통신(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알뜰폰 및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임시허가조건	○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시행 즉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을 받을 때까지 조건부 임시허가 부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입시허가증

입시허가번호	2020-15호	입시허가 연월일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아이콘루프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47-81-00375
	주소 서울시 중구 정계천로 100, 3층		
	대표자 김중협		
입시허가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명칭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주요내용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아이콘루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제공 *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입시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아이콘루프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등록·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2년간 입시허가 부여 *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조건) 불입의 '부가조건'을 준수할 것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입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붙임

부가 조건

< 부가 조건 >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

- 운전면허증의 개인정보, 단말에서 생성되는 개인키 등 개인정보는 이용자 소유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암호화하여 저장
- 아이콘루프 서버에는 공개키, 면허정보의 해시값, 면허효력 수정시간 등만 저장
- 네트워크 통신구간 암호화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API 활용(세부 시스템 구성·설계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위변조 방지 관련>

- 이용자는 모바일 본인인증을 통해 운전면허증 명의자와 이용자 간 동일인 확인 후 본인 소유 스마트폰(1대)에만 모바일 면허증 등록(1인 1단말*(회선))
 - * 동일인이 타회선에 등록 시도시 기 등록된 사실을 공지하여 중복 발급 차단, 이는 타 플랫폼에 연계된 면허증과도 연계하여 차단되어야 함
- ※ 스크린 캡처 방지 보안 기능 추가, QR코드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유효성 체크시 사용할 암호키 정보 보관하여 타 단말기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구현
- 모바일 단말에 저장된 운전면허증 검증을 위해 모바일 단말의 정보와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서버에서 전자서명 검증을 함으로써 위·변조 여부를 확인
- 경찰청과 직접 연동하여 원스톱 신고·접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위·변조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때와 등록된 면허증을 사용할 때 타인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할 것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방지 관련>

-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연계방법, 안전성 보장 방안” 등 구축 논의 중인 서비스 통합망에 참여하는 등 충분한 협의 후 사업 개시
 - * 연계 시기, 시스템 구성 및 설계 방안 등
- ** 단말기, 서버, 네트워크 등 보안 적용 방안 등

<기타 이용자 보호 방안>

-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용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에 한해 서비스 제공토록 체계 구축
- 이용자 불만 접수·처리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
- 이용자보호에 필요한 관련 책임보험 등 가입

<서비스 이용자 전자고지 사업연계>

-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적성검사 기간, 교통안전교육 등 안내 알림서비스 실시, 국민 편의기능 마련

< 既 임시허가 취득 개발업체와 사용·운영·검증방법 등 협의 >

- 업체별로 사용·검증방법이 달라 국민이 사용처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맞게 각각 다른 면허증을 구비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없도록 범용성 담보를 위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既 취득 업체와 방안 협의 필요
- 1인 1단말 정책을 유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구축 중인 통합망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함

- 신청기업이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CI를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는 방안'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

* (기타) 피싱 등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CI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이용자 고지 필요

임시허가증

임시허가번호	2020-16호	임시허가 연월일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신한카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02-81-48079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A동		
	대표자 임영진		
임시허가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명칭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주요내용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신한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제공 *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임시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신한카드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등록·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2년간 임시허가 부여 *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 (조건) 불입의 '부가조건'을 준수할 것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붙임 부가 조건

< 부가 조건 >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

- 운전면허증의 개인정보, 단말에서 생성되는 개인키 등 개인정보는 이용자 소유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암호화하여 저장
- 신한카드 서버에는 공개키, 면허정보의 해시값, 면허효력 수정시간 등만 저장
- 네트워크 통신구간 암호화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API 활용(세부 시스템 구성·설계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위변조 방지 관련>

- 이용자는 모바일 본인인증을 통해 운전면허증 명의자와 이용자 간 동일인 확인 후 본인 소유 스마트폰(1대)에만 모바일 면허증 등록(1인 1단말*(회선))
 - * 동일인이 타회선에 등록 시도시 기 등록된 사실을 공지하여 중복 발급 차단, 이는 타 플랫폼에 연계된 면허증과도 연계하여 차단되어야 함
 - ※ 스크린 캡처 방지 보안 기능 추가, QR코드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유효성 체크시 사용할 암호키 정보 보관하여 타 단말기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구현
- 모바일 단말에 저장된 운전면허증 검증을 위해 모바일 단말의 정보와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서버에서 전자서명 검증을 함으로써 위·변조 여부를 확인
- 경찰청과 직접 연동하여 원스톱 신고·접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위·변조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때와 등록된 면허증을 사용할 때 타인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할 것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방지 관련>

-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연계방법*, 안전성 보장 방안** 등 구축 논의 중인 서비스 통합망에 참여하는 등 충분한 협의 후 사업 개시
 - * 연계 시기, 시스템 구성 및 설계 방안 등
 - ** 단말기, 서버, 네트워크 등 보안 적용 방안 등

<기타 이용자 보호 방안>

-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용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에 한해 서비스 제공토록 체계 구축
- 이용자 불만 접수·처리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
- 이용자보호에 필요한 관련 책임보험 등 가입

<서비스 이용자 전자고지 사업연계>

-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적성검사 기간, 교통안전교육 등 안내 알림서비스 실시, 국민 편의기능 마련

<既 실시허가 취득 개발업체와 사용·운영·검증방법 등 협의 >

- 업체별로 사용·검증방법이 달라 국민이 사용처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맞게 각각 다른 면허증을 구비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없도록 범용성 담보를 위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既 취득 업체와 방안 협의 필요
- 1인 1단말 정책을 유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구축 중인 통합망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함

- 또한,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CI를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는 방안*은 신청기업이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
- 피싱 등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CI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이용자 고지 필요
 - * (방통위 검토의견) 이용자가 동의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CI를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목적으로 활용 가능

임시허가증

임시허가번호	2020-17호	임시허가 연월일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주)금성계전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18-81-22429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49		
	대표자 이한식		
임시허가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명칭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주요내용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1단계), 철도·고속도로·공항이착륙장의 교통 단속장비 등(2단계)에 설치하는 전원함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 기술을 적용하여,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임시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성계전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에 2년간 조건부 임시허가 부여 ○ (조건) 단, 다음의 검사·인증 등 수행 후 사업 개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부가 조건 ></p> <p>①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p> <p>② IoT 기능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및 무선 설비기준 등에 대한 인증</p> <p>※ 지정기업은 1단계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대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2단계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은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설치 수요처에서 사전에 설치장소의 적합성(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 금지 또는 제한) 검토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국표원·과기정통부에 제출 후, 사업 확대 추진</p> </div>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지정번호	2020-23호	지정연월일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주)카카오모빌리티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72-86-0084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13층		
	대표자 류금선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명칭)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주요내용)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택시(가맹, 고급, 대형) 호출시 애플리케이션 기반으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고, 승객이 해당 요금을 선결제 후 정해진 금액으로 이용하는 택시 서비스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지정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내용)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해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조건) 다음의 '부가 조건' 준수 필요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부가 조건 ></p> <p>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약 체결한 운송기점의 가맹택시가 운송플랫폼을 통해서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호출·예약)에만 한정하여 적용</p> <p>②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전 여객이 알기 쉬운 방법(팝업창 등)을 통해 규제특례에 따른 탄력 요금 적용사실 및 예상요금을 사전고지 할 것</p> <p>③ 운송사업자는 운송플랫폼을 통한 가맹택시 영업정보를 택시운영정보관리시스템(TIMs)에 연계·제공하고, 사업개시 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을 것</p> <p>* TIMs 통신규약에 따른 차량정보, 승차시간, 장소 등 영업정보 등</p> <p>④ 사업개시 전 예상요금 및 탄력요금 신청방안,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요금설계서 및 증빙서류를 국토부에 신고할 것 (사업 변경시에도 동일)</p> </div>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지정번호	2020-23호	지정연월일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주)KM솔루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22-87-00998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13층		
	대표자 류금선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명칭)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주요내용)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택시(가맹, 고급, 대형) 호출시 앱미터기 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고, 승객이 해당 요금을 선결제 후 정해진 금액으로 이용하는 택시 서비스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지정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내용)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해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조건) 다음의 '부가 조건' 준수 필요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부가 조건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약 체결한 운송기맹점의 기맹택시가 운송플랫폼을 통해서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호출·예약)에만 한정하여 적용 ②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전 여객이 알기 쉬운 방법(팝업창 등)을 통해 규제특례에 따른 탄력요금 적용사실 및 예상요금을 사전고지 할 것 ③ 운송사업자는 운송플랫폼을 통한 가맹택시 영업정보를 택시운영정보관리시스템(TIMs)에 연계·제공하고, 사업개시 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을 것 <p style="margin-left: 20px;">* TIMs 통신규약에 따른 차량정보, 승하차시간, 장소 등 영업정보 등</p> ④ 사업개시 전 예상요금 및 탄력요금 산정방안,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요금설계서 및 증빙서류를 국토부에 신고할 것 (사업 변경시에도 동일) </div>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